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11576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24. 10. 16.

판결 선고 2024. 11. 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2,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D와 인쇄물 제작·납품 거래를 하였고, 2020년경 140,512,86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다(이하 위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20. 11.경 원고에게 별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보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채무금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140,512,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별지 확약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D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확약서에 해당 채무를 보증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현

별지